

보도시점 : 2025. 12. 17.(수) 11:00 이후(12. 18.(목) 조간) / 배포 : 2025. 12. 17.(수)

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「공항시설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입법예고

12·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,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위한 「공항시설법」 개정·시행('26. 2. 27.)을 위해 후속 하위법령 개정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로 하는 「공항시설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('25. 12. 18. ~ '26. 1. 27.) 한다.
-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항·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 개선

※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6조

-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 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.
- 또한,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,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.

② 조류충돌 예방 강화

- (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등)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*,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.

• (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) 정책환경 변화, 조류충돌 현황, 인력·장비, 예방시설 구축·운영 등
• (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) 보고·전파절차, 인력·장비, 서식이동 현황, 위험요소관리, 위험도 평가 결과 등

※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6,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

- (조류충돌예방위원회)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 부처*를 확대하여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,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, 지상조업사,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.

*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해양수산부, 국가유산청

※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7,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9

- (조류충돌 위험도 평가)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한편, 공항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비행장*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,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.

* (대상 비행장)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, 연간 이착륙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

※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5,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10

- (전담인력·장비)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, 주요 조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·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였다.

※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6

- 국토교통부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“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,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하고, 우편*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

담당 부서	공항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 (044-201-4328)
		담당자	사무관	고상룡 (044-201-4337)
	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	박상민 (044-201-4347)
		담당자	서기관	공두영 (044-201-4344)
	공항건설팀	책임자	과 장	장 원 (044-201-4137)
		담당자	사무관	신동희 (044-201-4144)